

거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06 ~ 58
----------	-----------

제출연월일	2006. 11.
제출자	거창군수

1. 개정이유

○ 2006. 2. 5 「자원봉사활동기본법」과 같은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한 내용에 대하여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 지원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한편, 자원봉사활동 지원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자원봉사활동범위를 규정(안 제3조)

기존의 활동범위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분야 등을 추가하여 자원봉사활동 범위를 확대

나.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안 제5조)

자원봉사 발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기 위해 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자원봉사발전위원회를 설치하는 사항

다. 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규정(안 제7조)

기존의 사업범위에 지역의 기관·단체들과의 상시 협력 체계구축,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등 사업범위를 확대

라. 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안 제8조)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선임하며,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는 규정

마. 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안 제9조)

자원봉사센터의 운영형태에 따른 기본사항을 정하고, 센터의 조직으로 소장과 자원봉사 업무 직원으로 구성된 사무국과 직영시 정책결정 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두는 규정

바. 센터의 지원 및 예산. 결산에 관하여 규정(안 제10조 및 제11조)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회계연도 개시 3월전에 제출하고, 회계연도의 수입.지출결산서, 대차대조표 등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2월말·까지 제출하는 규정 마련

사.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행정적 지원 규정(안 제13조)

자원봉사단체에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규정

아. 학교·직장 등의 자원봉사활동 장려에 관하여 규정(안 제14조)

학교나 직장 등의 자원봉사활동 장려와 그 소속장이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공헌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자.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운영 및 행사에 관하여 규정(안 제15조)

매년 12월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하여, 군수 및 자원봉사단체가 그 날 및 그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실시할 수 있는 행사를 구체적으로 정함

차. 자원봉사자 사기진작 방안에 관하여 규정(안 제17조)

자원봉사 활성화 및 자원봉사자 사기진작을 위한 방안을 규정함으로 우수한 자원봉사자에 대한 다양하고 실질적인 지원 근거 마련

카. 자원봉사자 보험가입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안 제18조)

자원봉사센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고,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절차를 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자원봉사활동기본법(법률 제7669호), 시행령(대통령령 제19318호)
- 자원봉사센터 설치에 관한 규정(훈령 제173호)
- 표준개정안 : 행자부 참여여성팀-1525(2006. 4. 21),
도 여성정책과-4789(2006. 5. 1)호

나.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 입법예고(2006.8.25 ~ 2006.9.14) 결과 : 의견제출 없음

거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자원봉사활동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자원봉사센터”라 함은 자원봉사활동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법인·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개발·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봉사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관광·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기타 공익사업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군수는 자원봉사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 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자원봉사 발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시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
2. 자원봉사관련 시책의 조정 및 협의
3. 자원봉사 공공사업의 실시 및 관련 주요사항의 심의·의결
4. 자원봉사센터의 건의사항 및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의결

③ 위원회는 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등 2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자원봉사센터

제6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① 군수는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거창군자원봉사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군수는 센터의 전문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7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의 기관·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홍보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시범운영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8조(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① 센터 장은 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에서 선임하며, 기타의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에서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

② 센터 장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 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제9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 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가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하며, 센터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위탁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센터는 「민법」 제40조 또는 제43조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센터는 소장 1인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된 사무국을 두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⑥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20인 이내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대표는 민간인이 한다.

⑦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봉사자 또는 단체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0조(센터의 지원) 군수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 센터는 제10조에 의한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 회계연도 개시 3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 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제2항에서 규정한 수입·지출 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2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3장 자원봉사 진흥

제12조(자원봉사단체협의회) ① 자원봉사단체는 단체 상호간의 협력과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자원봉사단체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 협의회의 명칭, 조직, 운영 및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13조(자원봉사단체의 지원) 군수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학교·직장 등의 자원봉사활동 장려) ① 학교는 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도·관리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직장은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와 직장에는 자원봉사활동의 지도·육성을 위한 자원봉사지도자를 둘 수 있다.

④ 학교·직장 등의 장은 학생 및 직장인등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그 공헌을 인정하여 줄 수 있다.

제15조(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① 군수는 주민들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군수 및 자원봉사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5. 그 밖에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지역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16조(경력 및 실적 인정 등) 군수 또는 직장·학교 등 법인·단체의 장은 자원 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력 및 실적을 인정할 수 있다.

제17조(사기진작) 군수는 모범 자원봉사자 또는 제16조에 의한 실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기를 진작할 수 있다.

1. 표창 및 국내·외 선진지 시찰
2. 공공시설의 무료이용 및 할인혜택

3. 기타 자원봉사 활성화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보험가입) ① 군수는 센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에 보험 또는 공제가입의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자원봉사센터는 센터등록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군수에게 일괄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가입을 신청하여야 하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단체는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군수에게 일괄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센터에 보험 또는 공제료를 지원하여야 한다.
3. 군수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등록단체의 소속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자원봉사센터는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9조(실비지급) 센터 또는 자원봉사 수요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설립된 자원봉사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